#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95

발의연월일: 2023. 2. 20.

발 의 자: 박홍근 · 김회재 · 김정호

이동주 • 맹성규 • 한준호

진성준 • 정일영 • 조정훈

한정애 · 최기상 · 강은미

이정문 · 고민정 · 용혜인

오영환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79조제3항은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연구단체와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률안을 마련하더라도 대표발의의원은 1명만 명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특히 국회 의원연구단체의 경우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을 초월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인 대표발의규정이 오히려 초당적인 협 력으로 이뤄지는 입법정책개발과 의원입법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표발의의원으 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을 초월한 복수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 률안을 발의했음을 명시할 수 있는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의원들간 대화와 타협 및 협력을 위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 당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입법활동을 활발히 도모할 수 있도록함(안제79조제4항).

법률 제 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할 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을 3명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발의의원 명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의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 (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 -----. <u><단</u>서 삭제> 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할 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교섭단 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교섭단체에 속 하는 의원과 어느 교섭단체에 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발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 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 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생 략)